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93
------------	------

제출년월일 : 2014.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개정사유

가. 지방세기본법령(2013.1.1)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급대상·기준·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포상금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함.

## 2. 주요내용

- 가.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2조)
- 나.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안 제3조 및 안 제4조)
  -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발굴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 과년도 체납액 징수 체납연차 및 징수액을 기준으로 지급  
(1년차 100분의 1, 2년차 100분의 3, 3년차 이상 100분의 5)
  -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건당 30만원 한도
- 다. 신고처리 등(안 제5조)
- 라. 포상금 지급심사 및 지급신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마. 포상금 지급 및 환수(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바. 관련대장 및 보안유지(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다. 비용 추계서

#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세 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세(이하“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지급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하“시행령”이라 한다)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는 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사 등) ①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사는 해당 군·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되며 간사는 체납정리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구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군수·구청장이 해당 군·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3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③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유지) 시장은 신고자 등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b>1. 제보자 인적사항</b>						
<input type="radio"/> 성명 :		<input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전화번호 :						
<input type="radio"/> 주소 :						
<b>2. 피제보자 인적사항</b>						
<input type="radio"/> 성명 :		<input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상호 :		<input type="radio"/>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주소 :						
<input type="radio"/> 사업장소재지 :						
<b>3. 제보내용</b>						
<p>※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p>						
년        월        일 제보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b>1. 신고자 인적사항</b>						
<input type="radio"/> 성명 :		<input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전화번호 :						
<input type="radio"/> 주소 :						
<b>2. 피신고자 인적사항</b>						
<input type="radio"/> 성명 :		<input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상호 :		<input type="radio"/>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주소 :						
<input type="radio"/> 사업장소재지 :						
<b>3. 은닉재산 신고내용</b>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고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 받은 탈루세액 등	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좌 신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좌 번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 서식)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번	민 등 륙 호
	주 소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정 수 액	정 수 액			
포 상 금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 서식)

###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					
	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지방세 특별한 징수에 공적 등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 세입 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참조 :

발신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탈 루 세 액 등 제 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					
과년도 체납액 정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지방세 정수에 특별한 공적 등					

(별지 제7호 서식)

###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 보 자		부과 정수내역				납세의무자		정수 월일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확인
성 명	주민 번호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정수액	성 명	주민 번호				

(별지 제8호 서식)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신고자		징수내역				체납자		징수일자	포상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확인
성명	주민번호	년도납기	과세번호	세목	징수액	성명	주민번호				

(별지 제9호 서식)

###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부과자(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일자	포상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확인
직급	성명 (주민번호)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명	주민 번호				

(별지 제10호 서식)

###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월일	징수자		징수내역				체납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확인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명	주민 번호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표시

# 관련법령 검토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세 기본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138조(포상금의 지급)</li><li>○ 제65조(관허사업제한)</li><li>○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li><li>○ 제91조(압류의 요건)</li><li>○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li><li>○ 제93조(압류의 해제)</li><li>○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li><li>○ 제95조(체납처분의 유예)</li><li>○ 제96조(결손처분)</li><li>○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li><li>○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li><li>○ 제132조(고발)</li><li>○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li></ul></li><li>□ 지방세기본법시행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li></ul></li><li>□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li></ul></li><li>□ 지방세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li></ul></li><li>□ 국세기본법시행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7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li></ul></li></ul>
관련법규 정비대상	“내용은 별지 작성”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관련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
  2. 자료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 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②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 급 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는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

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 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 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 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 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 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환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할 때.

제93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날인하게 함

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5조(체납처분의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제9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32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33조의 2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

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세징수법

제7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제3조(지급기준)
-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
- 지급대상 : 시본청 및 각 군·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담당 공무원
- 지급기준
  - 과년도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2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 과년도 3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 나. 추계결과 : 불임

####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예산범위내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불임

### 4. 작성자

- 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정철환

## □ 2013년도 포상금 지급현황

○ 2013년도 예산액 : 300백만원

(단위:백만원)

년도	예산액	전체 징수액 (A)	포상금 신청 징수액 (B)	포상금 계산액 (C)	포상 금지 급액 (D)	전체 징수액 대비 (D/A)	포상금 계산액 대비 (D/C)
합계	300	51,006	37,999	612	<b>300</b>	0.5	49.0
현년도 (0.5%)		15,421	12,526	48	<b>17</b>	0.1	35.4
과년도 1년차분(1%)		19,265	14,154	135	<b>72</b>	0.3	0.53
과년도 2년차분(3%)		7,521	5,131	141	<b>72</b>	0.9	51.4
과년도 3년차분(5%)		8,799	6,188	288	<b>139</b>	1.5	48.2

※ 2013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계산액 대비 예산액 부족으로 49% 지급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세출	세입징수 포상금	600	600	600	600	600	3,000
	소계	600	600	600	600	600	3,000
재원 조달							
국비							
시비	소계	600	600	600	600	600	3,000
	일반회계	600	600	600	600	600	3,000
	특별회계						
	기금						
군·구비							
민간							
기타							

## 5. 참고사항

- 특·광역시 징수포상금 예산현황("13년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13년 본예산	300	2,520	850	300	290	110

- 인천시 년도별 징수포상금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금 액	900	500	802	600	300	300	